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 일 용 의원)

의안 번호	21-45
----------	-------

발의년월일: 2021. 4. 12.

발의자: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영미,
김진천, 이민석, 이홍민, 신종갑,
정혜경, 조영덕, 한일용

1.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시설의 정의에 ‘학원’ 추가(안 제2조)
-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 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

3. 관계법령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1. 4. 9. ~ 4. 14.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3호, 제4호”로, “보육시설”을 “보육시설, 학원”으로 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하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p> <p>5. (생략)</p> <p>제5조(실태조사)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p> <p>5. ----- 제3호, 제4호----- 보육시설, 학원--.</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9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p>

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도로교통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5조 제2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박준홍
연 락 처	02-3153-9642